

<p>제2023-62호 2023년 7월 11일(화)</p>	<p>시  보</p> <p>여수시</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정 지 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기 타

여수시 조례	제1894호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바·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여수시 조례	제1895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여수시 조례	제1896호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	17
여수시 조례	제1897호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22
여수시 조례	제1898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여수시 조례	제1899호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43
여수시 조례	제1900호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여수시 조례	제1901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여수시 조례	제1902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여수시 조례	제1903호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61
여수시 조례	제1904호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여수시 조례	제1905호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90
여수시 조례	제1906호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94
여수시 조례	제1907호	여수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1
여수시 조례	제1908호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108
여수시 조례	제1909호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112
여수시 조례	제1910호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117
여수시 조례	제1911호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여수시 조례	제1912호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24
여수시 조례	제1913호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6
여수시 조례	제1914호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여수시 조례	제1915호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137
여수시 조례	제1916호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1
여수시 조례	제1917호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52

여수시 조례	제1918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164
여수시 조례	제1919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여수시 조례	제1920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여수시 조례	제1921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여수시 조례	제1922호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여수시 조례	제1923호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181
여수시 조례	제1924호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여수시 조례	제1925호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13
여수시 조례	제1926호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218
여수시 조례	제1927호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221
여수시 조례	제1928호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225
여수시 조례	제1929호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229
여수시 조례	제1930호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34

회 말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1894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를</u>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를</u> 지급한다.</p> <p><u><신 설></u></p>	<p>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 ----- -----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u> ----- ----- . ----- -----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u> ----- -----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u>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u>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u></p>

<신 설>

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3. 5. 3)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② 월정수당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준용하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

②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20. 11. 3.>

제8조 (삭제 2013. 5. 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수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3. 13.>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지경기명



여수시 조례 제1895호

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95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11명”을 “11명 이내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p> <p>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 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정수는 <u>11명</u> 이내로 한 다.</p> <p>⑤ · ⑥ (생 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11명</u> 이내로 하고, <u>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u> <u>다.</u>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9인
2. 기획행정위원회 : 8인
3. 환경복지위원회 : 8인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 : 9인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라목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문화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 가.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환경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

- 가. 수산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또한 상임위원 선임일이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의 상임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보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

다)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선임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3인, 환경복지위원회 3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3인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우선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유고시 회의진행을 위해 출석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1896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96호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 문란, 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외국으로 이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6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① 의원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연구(검토)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자문·연구(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자문·연구(검토)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자문·연구(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연구(검토)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자문·연구(검토)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③ 위원회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명



여수시 조례 제1897호

붙임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1부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여수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여수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

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

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여수시의회의 규칙」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1898호

붙임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

- 심의 · 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해당국장”을 “국·소·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으로, “인사중”을 “인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전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조제5항 중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를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 및 도”를

“정부 및 전라남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로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전심의를 요청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전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전 우선순위와 안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의안”을 “안전”으로, “24시간”을 “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전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자문, 심의, 연구”를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

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심의·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p> <p>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 행정안전국장----- ----- ----- ----- ----- 국</p>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때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 소· 단장-----.

③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 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 인사 중-----
-----.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전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심의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
-----.

⑤ -----

-----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
-----.

1.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전심의를 요청한 사항

2. <u>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u>	2. <u>정부 및 전라남도</u> ----- -----
3. <u>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시장이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결정한 사항</u>	3. <u>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u>
4. <u>다른 조례·규칙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u>	4. <u>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u>
5. <u>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삭 제>
6. <u>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u>	<삭 제>
7. <u>행정 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삭 제>
8. <u>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삭 제>
9. <u>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삭 제>
10. <u>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지원 및 보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삭 제>
11. <u>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u>	<삭 제>
12. <u>향토예비군 직장중대 운영</u>	<삭 제>

<u>에 관한 사항</u>	
<u>13.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u>	<삭 제>
<u>14.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 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삭 제>
<u>16. 불용 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u>	<삭 제>
<u>17.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u>	<삭 제>
<u>18.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삭 제>
<u>19. 이웃돕기 심의, 생활향상 (영세민 없는 마을조성)에 관한 사항</u>	<삭 제>
<u>20.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u>	<삭 제>
<u>21.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 불허민원심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u>	<삭 제>
<u>22. 환지심의, 수산진흥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2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u>	<삭 제>
<u>24.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u>	<삭 제>

항

25. 영세민생활 안정 기금 관리
심의에 관한 사항

26. 그밖에 시장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7.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
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
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
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
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삭 제>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
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
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
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
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 안건-----
-- 5일 -----
----- .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
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삭 제>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4항-----
---- 자문-----
-----.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
---- 대하여 ----- 관계공무원 ----- 들을 -----
-----.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

---- 1명-----.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

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
· 심의 · 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
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③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심의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전심의회를 요청한 사항
2. 정부 및 전라남도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달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30., 2011. 1. 17.>

③ 삭제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1899호

붙임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2(회의수당)은 2024.1.1.부터 적용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기명



여수시 조례 제1900호

붙임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향인”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p> <p>제3조(출향인의 지위) ①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출향인의 지위)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 제8조 (생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출향인 또는 향우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행사 홍보사업
2. 시와 향우회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

4. 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송년·초청 간담회 등 각종 행사
5.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관장) ① 시와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수향우인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남 / 여)				
	소속 향우인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발급대상	관계	성 명 (한자 및 영문)	성별	생년월 일	직업	주소	비고 (주요경 력)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초본 각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여 수 향 우 인 증	
제 호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출신지(읍·면·동) :
	주 소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 인

규격 : 85mm × 54mm

(뒷면)

 여수시 YEOSU CITY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향우인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을 소지한 여수향우인은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 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발급 번호	발급 일	비고
		성명	성 별	생년월일	현주소	등록 기준지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이경민



여수시 조례 제1901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1902호

붙임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을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으로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1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03호

붙임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기본지원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은 시설사용 주체에 따라 관련 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②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의료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노인회관·공중목욕탕·태양광시설·방송통신시설 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

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내용 기록은 주요내용 요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상황 점검·시정요구 및 시설물 환수)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근기



여수시 조례 제1904호

붙임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 8. 삭제

제4조 앞에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는”을 “시장
은”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 ④시장은 학교, 시민,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자발적인 에너
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
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에너지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치**)”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활성화 관련 민·관협력 사항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3.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시”를 “수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제4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 (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0부제**”를 “**부제**”로, “**주차시**”를 “**주차 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업무용 관용차량은 경차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

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기본 원칙) <u>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u> 1. <u>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u> 2. <u>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u> 3. <u>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u>	제2조(기본 원칙)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u> 1. <u>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u> 2. <u>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u> 3. <u>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u>
제3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u>	제3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u>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

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말한다.

6.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에너지

<삭 제>

제4조(시장의 책무) ①여수시장

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③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시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 장 은

----- 노력해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 시민,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삭 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

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 협력해야 -----.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시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 협력해야
-----.

<삭 제>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활성화 관련 민·관협력 사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 절약 교육, 설명회, 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 담당

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

가.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
문기관·사업체 등의 전
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3.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
다.

시 의회 의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생략)

②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1회 이상으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 수시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생략)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해촉)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삭 제>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설치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2. (생략)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참여 제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업무용 관용차량은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

4. ----- 부제
----- 주차
시 -----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삭 제>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삭 제>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시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3,000제곱미터이상 다음 각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 시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축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삭 제>

제1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05호

붙임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

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영 제28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1906호

붙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인구영향평가”란 주요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 및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

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 분석
2.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에 대한 사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결혼·임신·출생·양육 지원 사업
4.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
5.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7.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9.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력 사업
10.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기업, 법인, 개인 및 공무원 등을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인구정책위원회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가. 인구정책 관련 기관 업무 관계자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안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3.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표]

사업별 지원 기준 및 내용(제6조 관련)

지원분야	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전입 인센티브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민	○ 10만원	최초 1회 지급 단, 전입자 중 출생등록일 기준 1년 미만 출생아와 시신규 국가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2. 전입 이사비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1년이 지난 시민	○ 10만원	
3. 전입 장려금	○ 대학생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대학생	○ 50만원 이내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전입 인센티브 및 전입 이사비 지원 불가
	○ 해양경찰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해양경찰교육원생	○ 30만원 이내	
4. 전입유도 우수기업·기관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직원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전입유도 1인당 3만원 ○ 총액 300만원 이내	
5.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여주시 관내 전세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부부 한명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시 거주)
<p>※ 지원금은 여수상품권(종이형·카드형·모바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 분야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1907호

붙임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취득 지원 및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자격취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장소 지원, 협조, 제공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의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공원, 전시체험장 등 조성 및 운영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1.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2.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교육관련 지원사업)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② 시장은 드론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드론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드론기술의 시범적용, 실증 및 상용화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전문교육기관
5. 정부나 도·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드론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드론산업 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수시교육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여수시 조례 제1908호

붙임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자동·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수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교육·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여수시 소속 공무원 및 여수시의회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여수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09호

붙임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

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장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11 일

여 수 시 장 이근기



여수시 조례 제1910호

붙임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보건·의료·주거·요양·돌봄 등 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현금·현물, 서비스 등 체계의 전체를 말한다.
2.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통합돌봄기관”이라 한다)이란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돌봄의 대상) 통합돌봄의 대상(이하“대상자”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수시민으로서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추진방향,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발굴과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추진 사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케어회의) 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케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상자에 관한 사례회의
2. 프로그램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
3. 대상자에 관한 자원, 통합지원 및 통합돌봄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의료·재택진료·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지원 사업
2. 건강·돌봄·요양 지원 사업
3. 대상자의 안전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응급안전 알림 등 스마트 돌봄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사업
6.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욕구조사, 연구, 성과, 평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사업

제8조(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① 시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1. 통합돌봄 실행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911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11호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장애인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장애인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 와 같음)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종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기명



여수시 조례 제1912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12호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영기



여수시 조례 제1913호

붙임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수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여수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내에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구직지원금)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제8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 월 11 일

여 수 시 장

차경기



여수시 조례 제1914호

붙임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14호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을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협의체를” 을 “실무협의체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보칙” 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으로 한다.

제32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

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35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협의체 참여를 촉</p>	<p>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① ----- ----- ----- 실무협의체를 -----.</p> <p>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p>

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신 설>

<신 설>

<신 설>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제32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

	<p>도개선사항 제시</p> <p>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p>
<p><신 설></p>	<p>제35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신 설></p>	<p>제3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등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신 설></p>	<p>제37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p>

<p><신 설></p> <p>제32조 (생 략)</p>	<p>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39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p>
---	--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차경민*



여수시 조례 제1915호

붙임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네체육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수시민을 말한다.

제3조(예산확보)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동네체육시설은 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 ① 읍·면·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및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

③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1916호

붙임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여수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계 법령”이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도서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신청 등

제5조(공간과 위치) 시장은 주민들의 이용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면적
2.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며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8조(등록 신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라남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도서관자료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취소 및 폐관) ①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는 폐관신고서와 발급받은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자료 및 물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개관·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자 선정과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

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전출, 사망 등으로 해촉될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지연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제16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 운영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일
3.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전까지 휴관일자 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방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단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의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관리한다.

③ 작은도서관 관할 읍·면·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지역여건 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운영자의 임명 및 해촉)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 외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1명 이상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당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분

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작은도서관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경우
2.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대출한 이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 반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
5.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② 운영자는 도서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립 작은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자 활동비 및 도서 구입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될 수 있고,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제2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시행 전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정관
3. 작은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작은도서관 자활능력과 후원 제도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 사항
 6.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교육 참석 상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 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3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와 기업 및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경민



여수시 조례 제1917호

붙임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50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여수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국장(에너지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농·축·수산부문, 폐기물부문, 산림부문, 해양·수산부문, 저탄소부문, 건강부문, 물관리부문)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및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0조(탄소중립도시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부문) ①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 가능기간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정의로운 전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노동 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

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31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시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계획, 모집방법, 심사·선정, 지정기간, 지정취소, 관리·감독, 예산·회계의 처리 및 결산, 성과평가 등은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8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1918호

붙임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18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를 제20조로 조문이동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정기호



여수시 조례 제1919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그 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 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6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p> <p>① ----- ----- ----- <u>법 제2조8호에</u> <u>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25조</u> <u>에 따른</u> ----- ----- ----- ----- ----- <u>위탁처리 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 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폐기 물 중간처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 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자는 폐기물을 시장이 설치·운영 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 에는 반입 5일전에 배출자, 배출장 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p> <p>① ----- ----- ----- <u>법 제25조에</u> <u>따른</u> ----- ----- ----- ----- ----- <u>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단</u> <u>만,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u> <u>하려는 경우 규칙 제14조 별표 5의</u> <u>제6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u> <u>발급 받아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p>④ <삭 제></p>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1920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20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업무"를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수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폐기물 2. 공사장 생활폐기물 3. ~ 5. (생 략) 	<p>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p>제26조(간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u>폐기물관리업무</u>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u>폐기물관리업무</u>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p>제26조(간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u>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u> ----- ----- <u>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u> ----- -----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1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921호

붙임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21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9.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신설></p> <p>8. (생략)</p>	<p>제4조(지원사업)</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p> <p>9.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경미



여수시 조례 제1922호

붙임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셋째아 이상”을 “셋째아”로, “셋째 이상”을 “셋째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아 이상”을 “둘째아”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셋째아 출산가정 : 1,500만원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2,000만원

제4조제2항제1호 중 “2년간”을 “4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아 이상”을 “둘째아”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씩”을 “200만원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

⑤ 제2항제1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셋째아 이상 출산가정</u>”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u>셋째 이상</u>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p> <p><신설></p> <p>6. (생략)</p> <p>제4조(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3. 9., 단서 삭제 2020. 12. 31.></p> <p>1. 첫째아 출산가정 : 300만원</p> <p>2.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500만원</p> <p><신설></p> <p><신설></p> <p>②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첫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p>	<p>제2조(정의)</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셋째아 -----</p> <p>-----</p> <p>- - - - - 셋째아</p> <p>-----</p> <p>-----.</p> <p>6.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4조(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p> <p>①</p> <p>-----</p> <p>----- .</p> <p>-----</p> <p>--</p> <p>1. ----- 500만원</p> <p>2. 둘째아 ----- 1,000만원</p> <p>3. 셋째아 ----- 1,500만원</p> <p>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2,000만원</p> <p>②</p> <p>-----.</p> <p>1</p> <p>-----</p> <p>-----</p> <p>----- 4년간 -----</p>

2.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⑤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 3. 9.]

<신 설>

2. 둘째아 -----
200만원을

----- 200만원씩 -----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근기



여수시 조례 제1923호

붙임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산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수산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
3.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어업 육성
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8.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여수시에 두고 있는 수산업 등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수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분야
2. 어촌개발 및 수산업 복지 증진 분야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
4.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
5. 어촌 해양관광·문화 분야
6.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24호

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세척 시설”을 “세척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요트를”
을 “마리나선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요트를”을 “마리나선박을 해상
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 중 “요트를”을
각각 “마리나선박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요트마리나
시설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라 한다”를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때
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여수시의”를 “여수시”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17조 중 “위탁운영을 하는 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하여 개방 한다”를 “한정하여 개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방 계획”을 “개방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각종대회”를 “각종 대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대설비를 하고자”를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 “요트마리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마리나 및 부대시설”을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 칙”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를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련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위원회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다.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2.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운영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 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소호요트마리나	여수시 소호동 505-2번지 일원
이순신마리나	여수시 웅천동 1873-1번지 일원
원형마리나	여수시 웅천동 1886번지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클럽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p> <p>6. “해상시설”이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세척시설----- -----.</p> <p>6. ----- 마리나선박을 ----- ----- -----.</p>

다.

7. “계류장” 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8. “적치장” 이란 요트를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생략)

10. “인양기” 란 요트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

11. “세척시설” 이란 요트를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12. (생략)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소호마리나항만과 웅천마리나항만 내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의 요트마리나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8. ----- 마리나선박을 해상에 -----.

7. ----- 마리나선박을 -----.

9. (현행과 같음)

10. ----- 마리나선박을 -----

-----.

11. ----- 마리나선박을 -----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요트마리나 시설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

----- “시장” 이라 한다 -----

-----.

② -----
-----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2조의2(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

----- 해양경찰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

----- 운영위원회-----

----- 여수시 -----

-----.

제13조(입장의 제한) -----

-----.

있다.

1. ~ 5. (생략)

6.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 9. (생략)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 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7조(손해배상) 위탁운영을 하는 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1. ~ 5. (현행과 같음)

6.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

7. ~ 9.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② -----

----- 관
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
탁자” 라고 한다)--- 그 밖의 ----
-----범위에서-----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 수탁
자-----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육상시설 이외의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방 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정하여 개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개방계획-----

-----.

제22조(사용료) ① -----
-----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서식-----

-----.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p>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각종대회</u> 및 행사</p>	<p>1. ----- -- <u>각종 대회</u> -----</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u>부대설비를 하고자</u>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 ----- <u>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u>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u>체육시설</u>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p>	<p>제2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 ---- <u>요트마리나 시설</u> ----- ----- ----- -----.</p>
<p>② 사용자는 <u>요트마리나</u>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② ----- <u>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u>-----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장 <u>보칙</u></p>	<p>제8장 <u>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u></p>
<p>제28조(<u>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u>)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련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u> 운영할 수 있다.</p>	<p>제28조(<u>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u>) ① ----- ----- ----- <u>위원회를 설치·운영</u>----- ----- -----.</p>

② 위원장은 요트마리나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나.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다.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신 설>

기간으로 한다.

⑤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2.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0조(운영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 설>

제29조 ~ 제31조 (생략)

제9장 보칙

제31조 ~ 제33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마리나 항만 및 관련시설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 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9. “레포츠교육장”이란 요트 등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0. “인양기”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
 11. “세척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요트마리나 시설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제2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

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8. 12.)
7. 「항만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개정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홍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8. 12.)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 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2.)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요트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목개정 2022. 3. 10.]

-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 및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
3.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
4.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 신설 2022. 3. 10.>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자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4. 주취자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요트마리나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자
8.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요트 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장 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요트마리나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성과평가 등)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조 신설 2022. 3. 10.>

제19조(청문)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5장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20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을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상시설 이외의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한다.

③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2.)

제21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시설로 구분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국가·전라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 8.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반환 한다
 4. 요트마리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사용자의 부대설비 및 손해배상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

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양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장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28조(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나.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다.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내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2조의2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 2.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운영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장 보 칙

제31조(조명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요트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 3.1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소호요트마리나	여수시 소호동 505-2번지 일원
이순신마리나	여수시 웅천동 1873-1번지 일원
원형마리나	여수시 웅천동 1886번지 일원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25호

붙임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주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숙박비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여수시 내부 지침에 의한다.

제4조(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26호

붙임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섬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수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생활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섬 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
2.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물류비
3.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
4. 그 밖에 섬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서근기



여수시 조례 제1927호

붙임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1. 차령

구분	사업의 구분		차령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1928호

붙임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지원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지원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 월 11 일

여 수 시 장 *조경기*



여수시 조례 제1929호

붙임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수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

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미만으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제9조 관련 사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1. 12. 29)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3조제2항관련)

1. 견인 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요 금		비고
	기본요금 (편도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시)	
2.5톤미만	25,000원	1,000원	
2.5톤이상~6.5톤미만	30,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15,000	없음	

2. 보관 요금

-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제외)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기경기



여수시 조례 제1930호

붙임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다.

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차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2항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

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차의 견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① 대행법인등이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보관 방법 등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요 금		비고
	기본요금 (편도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 시)	
2.5톤 미만	25,000원	1,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30,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2. 보관 요금

-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